

##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추경)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I.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모집 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Lv 1~2) 1억원 (Lv 3이상) 1.5억원	수시
	시범공장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 구축을 지원	3억원	8.12~9.6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시범공장 구축을 지원	6억원 (로봇 3억원 포함)	8.12~9.6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3억원	8.12~9.6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마이스터 인건비	* 전문가 : 8.12~8.30 * 참여기업 : 8.12~9.6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II. 사업별 지원계획

###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회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신규구축	고도화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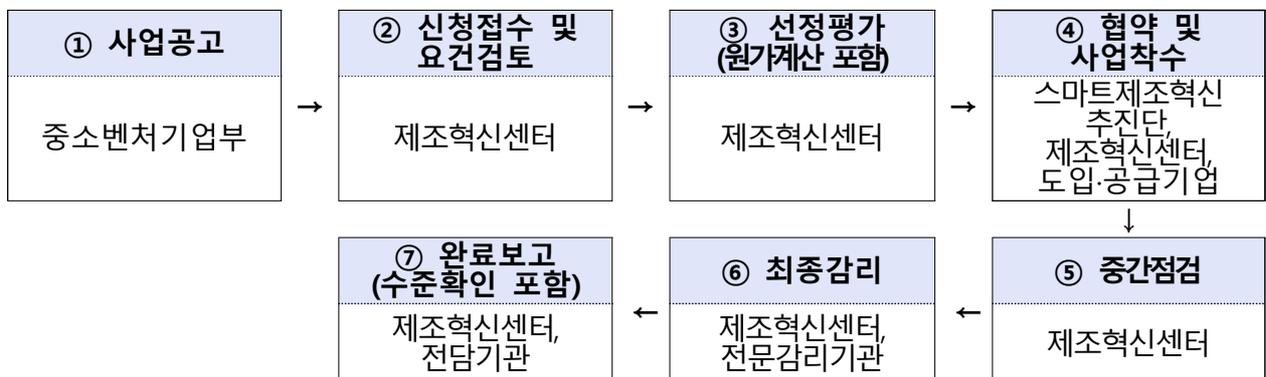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8월 1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중인 기업</li> <li>·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li> <li>·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li> <li>·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li> </ul>
---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탄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a href="http://www.oneshot.or.kr">http://www.oneshot.or.kr</a> )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군수품 제조기업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 <a href="https://mnd.go.kr">https://mnd.go.kr</a> ) 내 국방정책 → 전력지원체계 → 군수품 상용화 확대 →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 (2) 시범공장 구축

###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레벨 3 이상)을 지역·업종별로 구축

### □ 지원규모 : '19년 8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내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li>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li> </ul>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li> <li>* (레벨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2) 디지털화 → (레벨3) 데이터 분석 → (레벨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5) 지능화</li> </ul>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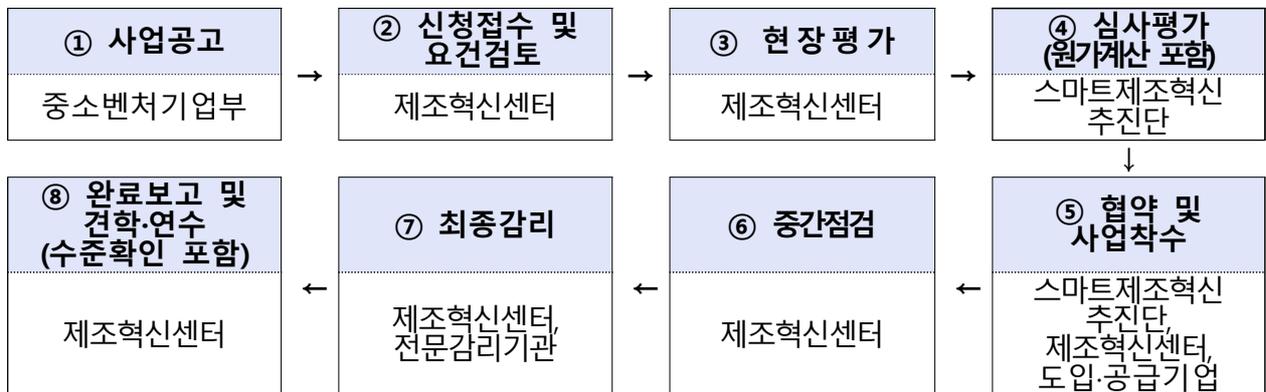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8월 12일(월) ~ 9월 6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4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a href="http://www.oneshot.or.kr">http://www.oneshot.or.kr</a> )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3)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구축

#### □ 사업개요

-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구축
  - \*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공정 및 작업절차 개선, 조직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 \* 근로자와 협업하여 작업 능률·편의·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동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19년 5개 내외, 기업당 6억원(시범공장 3억원+로봇활용 3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시범공장 구축과 ①스마트 마이스터 ②일터혁신 컨설팅 ③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을 연계 지원

#### < 본 사업 >

- (시범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 견학 기간,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름

#### < 스마트공장 시스템 예시 >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 연계사업 >

-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계획수립~실행)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스마트공장 전문가 무상 파견 : 1명, 3개월(주 2일 근무)
- (일터혁신 컨설팅) 직무분석·배치, 작업 매뉴얼 제작,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 등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 지원
  -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비용 일부 부담)
    - \* 노사발전재단, 시애틀컨설팅, 생산성본부, 능률협회컨설팅, 노무사회, 표준협회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로봇 우선 지원. 위험·유해 작업 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타 직무에 배치해야 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상세 내용 >

지원 분야	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li> <li>*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li> </ul>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li> <li>*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li> <li>* 로봇 설치 및 시운전</li> </ul>
로봇활용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li> <li>*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li> <li>*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li> <li>*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li> </ul>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검사 지원</li> <li>*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li> </ul>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 사업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별도로 노사합의 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과제 신청일 기준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타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기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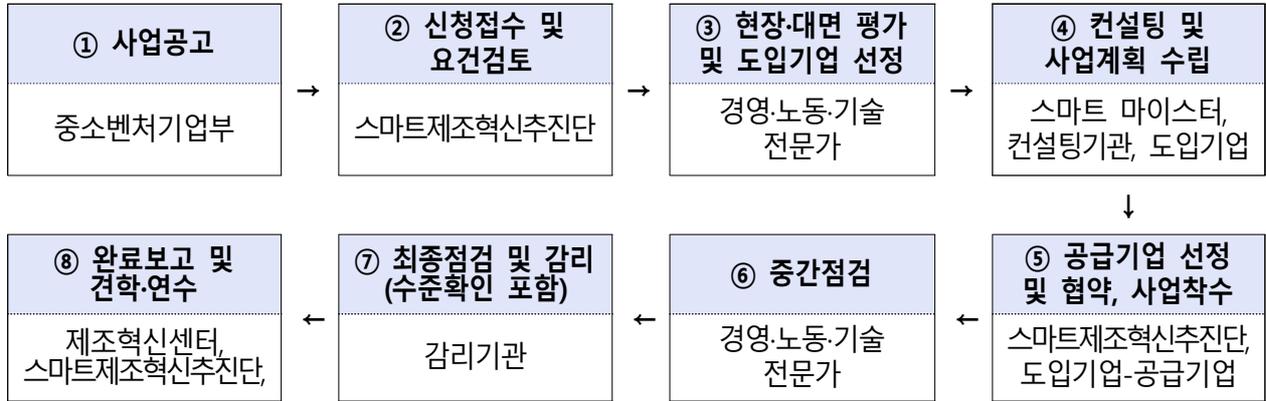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8월 12일(월) ~ 9월 6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2	노사합의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5	국세, 지방세 및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6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 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a href="http://www.oneshot.or.kr">http://www.oneshot.or.kr</a> )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li> <li>*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li> </ul>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li> <li>*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li> <li>* 로봇 설치 및 시운전</li> </ul>
로봇활용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li> <li>*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li> <li>*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li> <li>*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li> </ul>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li> <li>*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li> </ul>

#####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8월 12일(월) ~ 9월 6일(금) 17:00까지
- (제출서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서류 확인 후 작성 및 준비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0부 및 원본파일 (원본1부, 사본9부)	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기관별
3	공장등록증 1부	도입기업
4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기관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관별
6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자유양식
7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1부(공급기업 작성)	자유양식
8	작업현장 동영상 자료 1부	자유양식(2분이내)

\* 관련양식(지정양식)은 <http://www.kiria.org>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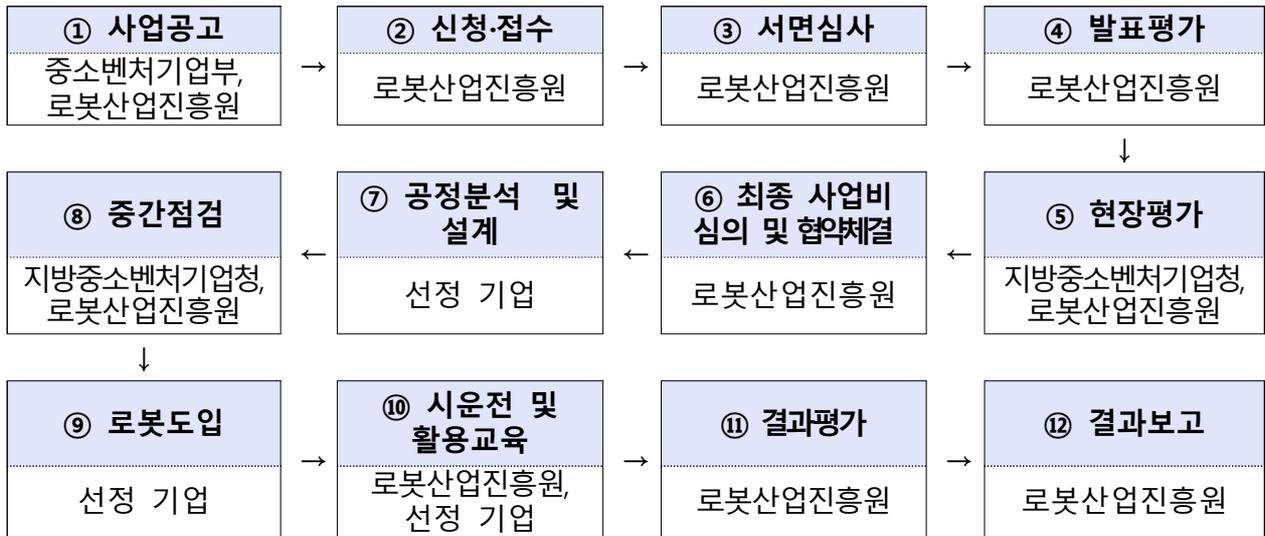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 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로봇활용 제조혁신 담당자 앞

\* 방문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한 과제에 한함

\* 우편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한 과제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함

□ 지원절차



□ 가점 내용 : 항목 당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선정 공문 또는 협약서, 수준확인서 등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로봇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을 활용하여 공정을 설계한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으로 판단)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중인 기업</li> <li>·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li> <li>·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li> </ul> |
|--|--|

---

## (5) 스마트 마이스터

---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설계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1 현장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1일 6시간 이상 근무)
- 급여 : 280만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이며 4대 보험료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월 230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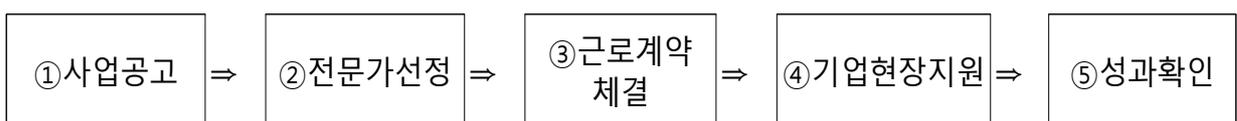
#### 신청자격(사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 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2일(월) ~ 8월 30일(금) 17: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
  - 이력서(붙임자료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자료 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자격증 사본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 [qlib@korcham.net](mailto:qlib@korcham.net)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02-6050-3855)

□ 유의사항

- 이력서의 경우에는 문서파일과 스캔본을 반드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 혹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고용보험 홈페이지→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고용보험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인쇄→스캔파일 메일 전송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혹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증명받고자 하는 내용(1번 혹은 3번으로 체크)→발급(민원처리에 3시간정도 소요됨) / 폐업사실증명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1차 참여기업 모집

###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 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 신청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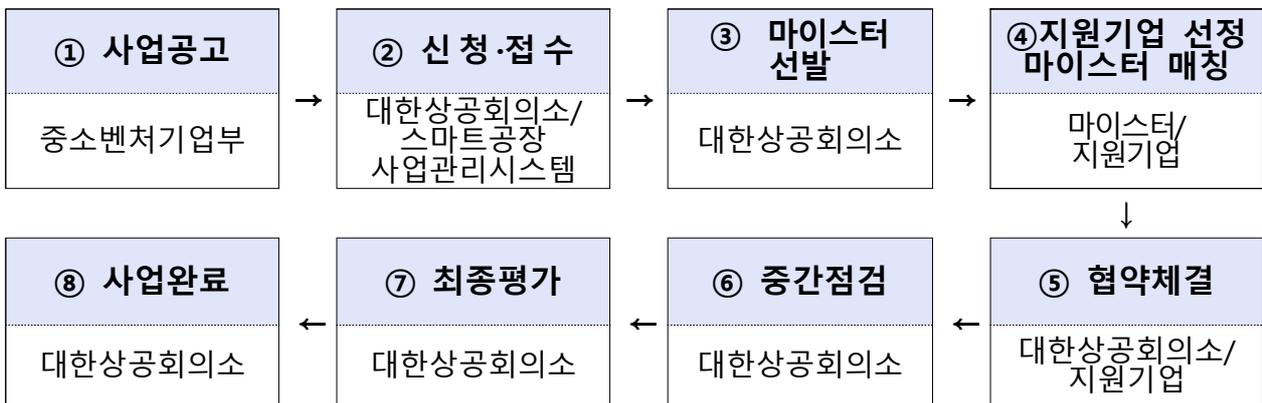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2일(월) ~ 9월 6일(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붙임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
  - 참가신청서(붙임자료 3)
  -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 4)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 [qlib@korcham.net](mailto:qlib@korcham.net)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02-6050-3855)

※ 단,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마이스터 활용 체크로 대체하며,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확정되면 마이스터를 우선적으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일자 기준 지원)

□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문서파일과 스캔본을 반드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구축 예정인 기업의 경우 스마트 마이스터를 활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Ⅲ. 문의 및 연락처

####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신규구축 및 고도화 시범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3, 0855, 0861 1644-1736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9533, 9536
스마트 마이스터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5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